

감 사 원

문책·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오수처리 공법업체 선정 관련 민원업무 부당 처리 등

소 관 기 관 ① 한국공항공사 ② 장흥군 등 [별표] 기재 9개 시·군

조 치 기 관 ① 한국공항공사 ② 장흥군 등 [별표] 기재 9개 시·군

내 용

1. 사건 개요

한국공항공사는 2014. 6. 18. ♡공항 오수처리시설에 적용할 오수처리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 “♡공항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공법기술제안 참가의향서 작성지침”(이하 “참가의향서 작성지침”이라 한다)을 공고²⁾하여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이하 “●●”이라 한다) 등 13개 공법업체³⁾로부터 참가의향서를 제출받고, 같은 해 7. 7. 위 업체 중 참가의향서에 보유공법이 국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에 적용되어 가동 중인 실적을 10건 이상 기재한 ●● 등 7개 업체로부터 기술제안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받아 사업부서(◆지역본부 □팀)에서 실시한 1차 평가 및 공법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한 2차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같은 해 8. 12. 최고 점수를 받은 ●●을 오수처리시설의 공법업체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은 2014. 7. 7. 기술제안서와 함께 “부유식 표면포기장치를 이용한 SBR 공법의 하수 또는 폐수처리장치 및 반응조의 제어방법” 특허(특허번호

2) 한국공항공사는 2014. 4. 30. 주식회사 ○○사무소(대표이사 B)와 “♡공항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오수처리시설 공법업체 선정업무를 수행하되 주요 업무는 위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약정하여 위 업체가 공법업체 선정관련 공고, 서류접수 등의 실무를 대행

3) 한국공항공사는 공법업체를 하수처리 공법(특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발주처에 보유 공법(부속 기재제 포함)을 공급 및 보증하는 업체로 정의

ㄱ口호, 2010. 2. 4. 등록, 이하 “신규특허”라 한다)가 적용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3건을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위 공사는 2014. 8. 26. 및 9. 4. ●●으로부터 [별표] “적용공법이 잘못 기재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 발급 및 제출 명세”와 같이 신규특허와 관련하여 총 17건의 실적서류를 제출받는 등 ●●이 보유한 신규특허의 국내 적용실적이 10건 이상인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같은 해 10. 29. ●●을 공법업체로 선정하였다.

또한 위 공사는 2015. 6. 3.부터 같은 해 7. 21. 사이에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이 위 공사에 허위의 실적서류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 3건을 접수하여 이를 검토한 후 공법업체 선정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이후 위 공사는 2015년 9월 ●●과 “♡공항 오수처리시설 신축공사 기술사용 협약서”(이하 “기술사용 협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고, 2016. 4. 21. 서울지방조달청에 신규특허가 적용된 기자재 구매설치를 수의계약 요청하여 서울지방조달청은 같은 해 5. 30. ●●과 수의계약(계약금액 1,835백만여 원)하였다.

한편 장흥군 등 [별표]에 기재된 9개 시·군은 2014. 2. 13.부터 같은 해 8월 사이에 ●●의 신청을 받아 위 관서가 관리·운영하는 하수 또는 폐수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에 관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 실적서류의 발급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2017. 11. 15.~12. 7.) 결과 장흥군 등 9개 시·군은 ●●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의 실적서류 발급을 신청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신청한 대로 실적서류를 잘못 발급하였고, 위 공사는 ●●으로부터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

받고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을 공법업체로 선정하는 한편, 허위서류를 제출한 ●●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민원처리 과정에서 업무담당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민원회신을 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공법적용 확인업무 불철저 및 부정당업체 제재 미조치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위 공사가 2014. 6. 25. 공고한 “♡공항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처리공법 선정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이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공법 보유업체는 제시한 공법이 국내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준공 및 정상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정상가동 실적증명서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공법업체로 선정된 후 내용에 중대한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 취소, 형사고발 및 설계지연에 따른 비용을 변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국공항공사의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공법선정 계획보고”(2014. 7. 26. ◆지역본부장 전결)에 따르면 공법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업부서에서 기술제안서의 중대한 오류, 허위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공사의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공법선정 결과보고”(2014. 8. 12. ◆지역본부장 전결)에 따르면 공법업체로 결정된 ●●에 대하여 신규특허의 국내 적용 실적이 10건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4)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에는 용량, 준공일자, 적용공법, 기술보유사, 공사기간 등의 자료가 기재되어 있음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등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 대통령령 제2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8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등에게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별표]에 기재된 장흥군 등 9개 시·군에 발급신청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공법적용 확인서⁵⁾ 및 적용공법 확인서⁶⁾의 ‘적용공법’란에는 공법명, 신기술, 특허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장흥군 등 9개 시·군은 ●●의 신청을 받아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공법적용 확인서 등을 발급할 때에는 하수 또는 폐수처리시설에 적용되지 않은 특허가 적용공법란에 기재되어 발급되는 일이 없도록 공법적용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여야 했고, 위 공사는 ●●으로부터 2014. 7. 7.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기재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3건을, 같은 해 8. 26. 및 9. 4. 신규특허의 국내 적용실적으로 공법적용 확인서 12건 및 적용공법 확인서 5건(13개 기관의 총 20건)을 각각 제출받았을 때에는 위 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야 했으며, 위 서류가 허위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에 대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했다.

2) 허위의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발급 및 검토 등 부적정

위 공사가 2014. 7. 7. ●●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제안서에는 보유공법이 국내 하·폐수처리시설에 적용된 사례로 ㄱ 하수처리시설 등 5개 처리시설이 기재되어 있었고, 신규특허가 적용된 사례로 [별표]와 같이 ㄱ 하수처리시설 등 3개 처리시설

5) 신규특허가 하·폐수 처리시설에 적용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적서류

6) 하·폐수 처리시설에 공법보유사의 특허 등이 적용되었다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실적서류

(일련번호 1, 2, 10번)의 정상가동 실적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기간(2017. 11. 15.~12. 7.) 중 확인한 결과 장흥군은 2014. 4. 2. ●●으로부터 위 관서가 관리·운영하는 장흥 하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발급을 신청받아 이를 검토·처리하면서 위 실적증명서의 적용공법란에는 위 처리시설에 적용된 환경부 신기술 지정 제33호⁷⁾ 및 검증⁸⁾ 제35호 외에 위 처리시설에 적용되지 않은 신규특허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같은 해 4. 10. ●●의 신청대로 위 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이 장흥군, 공주시 및 제천시로부터 발급받아 위 공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는 이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신규특허는 2010. 2. 4. 등록되었으나 ●●이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에는 [별표]와 같이 처리시설이 2002년 9월 또는 2008년 4월에 착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공사는 신규특허의 등록일과 위 처리시설의 착공일을 비교하면 3개 처리시설 중 2개 처리시설(ㄱ 하수, ㄴ 하수)에는 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나머지 1개 처리시설(ㄷ 폐수)도 공주시에 문의 등을 하여 확인하였다면 위 처리시설의 공법업체 선정(2009. 7. 13.)이 신규특허가 등록(2010. 2. 4.)되기 전에 이루어져 이 또한 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위 공사의 사업부서는 2014. 7. 28.부터 같은 해 8. 1.까지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1차 평가)를 하면서 ●●이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에 허위의

7) 속도가변 부유식 표면포기장치와 에어벤트식 배출장치를 이용한 하수의 생물학적 고도처리기술(2007. 10. 18. 유효기간 만료)

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신기술 인증을 받은 신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술검증을 한 때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을 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업체로 상정하였고, 1차 평가 및 2014. 8. 7. 개최된 위 위원회의 2차 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이 최고 평점을 받았다는 사유로 같은 해 8. 12. ●●을 공법업체로 결정하였다.

3) 허위의 공법적용 확인서 등 발급 및 검토 등 부적정

위 공사는 ●●으로부터 신규특허의 국내 적용실적과 관련하여 2014. 8. 26. 12건의 공법적용 확인서를, 같은 해 9. 4. 5건의 적용공법 확인서를 각각 제출받았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이 위 공사에 제출한 공법적용 확인서 12건 및 적용공법 확인서 5건 등 확인서 17건(처리시설 14개)을 확인한 결과 [별표]와 같이 2014. 8. 26. 제출된 공법적용 확인서 12건(12개 처리시설) 중 8건⁹⁾(8개 처리시설, 일련번호 1~8번)의 경우 해당 처리시설은 신규특허 등록 이전에 착공되어 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2-가-2)항”에 실시한 바와 같이 ●●이 장흥군에 공법적용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서 적용공법란에 ㄱ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되지 않은 신규특허를 허위 기재하여 신청하였고, 장흥군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14년 8월경(날짜 모름) ●●이 신청한 대로 공법적용 확인서를 발급하는 등 ●●이 장흥군 등 7개 시·군으로부터 발급받아 위 공사에 제출한 공법적용 확인서 8건은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2014. 9. 4. ●●이 제출한 적용공법 확인서 5건(5개 처리시설, [별표] 일련번호 1~3, 9, 10번)의 경우 허위로 발급받은 공법적용 확인서 8건과 같은 방법으로 ●●이 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적용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신청하였고,

9) 정상적으로 발급된 ㄴ 폐수처리시설, ㄷ 폐수처리시설, ㄹ 폐수처리시설(2단계), ㅈ 하수처리시설의 공법적용 확인서 4건 제외

장흥군 등 5개 시·군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 신청한 대로 발급하는 등 ●●이 장흥군 등 5개 시·군으로부터 발급받아 위 공사에 제출한 적용공법 확인서 5건은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위 공사는 ●●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법적용 확인서 등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걱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4. 10. 29. ●●을 ♡공항 오수처리시설 공법업체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은 공법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2-가-2) 및 3)항”의 내용과 같이 [별표]에 기재된 장흥군 등 9개 시·군으로부터 발급받은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3건, 공법적용 확인서 8건, 적용공법 확인서 5건 등 계 16건의 허위서류를 위 공사에 제출하였는데도 공법업체로 선정되었고, 2017. 12. 7. 현재까지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지 않고 있다.

나. 공법업체 선정 관련 민원업무 부당 처리

1) 관계 법령 및 판단 기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공법보유사는 공법 적용실적, 공법이 적용된 하·폐수처리장별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유지관리비 등을 기술제안서에 기재하고 이와 함께 적용공법, 연간 유지관리비, 기간별 유입수질과 방류수질 등이 기재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공법업체로 선정된 후 내용에 중대한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 취소, 형사고발 및 설계지연에 따른 비용을 변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공사가 2014. 7. 26. 작성한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공법선정 계획보고”에 따르면 최근 1년(2013. 1. 1. 이후) 동안 방류수질기준 초과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1건 이상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기술제안서를 접수하도

록 되어 있다.

또한 ●●은 해당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기재하여 공주시, 장흥군 및 제천시로부터 발급받은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근거로 기술제안서의 주요 내용¹⁰⁾을 작성한 후 2014. 7. 7. 기술제안서 및 3건의 실적증명서를 위 공사에 제출하였고, 위 공사는 이에 대하여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3건 이상 제출 시 국내 적용실적으로 최대 2점(1건 1.2점, 2건 1.6점)을 주도록 배점기준을 정한 공법사의 적정성¹¹⁾항목과 더불어 수질관리의 적정성, 가동의 적정성, 공법의 경제성 등의 항목에 대한 1·2차 평가를 거쳐 같은 해 10. 29. ●●을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공법업체로 선정(적용공법: 신규특허)하였다.

한편, 위 공사는 2015. 6. 3. ◎◎로부터 ♡공항 오수처리시설 공법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이 공주시 ㄷ 폐수처리시설 등 5개 처리시설(공주시 ㄷ, 장흥군 ㄱ, 제천시 ㄴ, 양구군 ㄷ¹²⁾, 청원군 ㄹ¹³⁾)의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위 공사에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이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 실적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하는 등 같은 해 6. 3.부터 같은 해 7. 21. 사이에 ●●이 위 공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의 실적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 3건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이 2015. 6. 3. 위 공사에 제기한 민원서류에는 ㄷ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신규특허 공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적용된 것으로 잘못 기재된 정상가동

10) 처리성능 관련 자료, 수온변동에 대한 운영계획, 국내 하·폐수처리시설 공법 적용사례, 적용 하수처리장별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등

11) 4점 배정(경영상태 2점,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의 국내 적용실적 2점)

12) ●●은 위 처리시설의 실적서류는 위 공사에 제출하지 않았음

13) ●●은 1단계 ㄹ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환경부 신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기재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2단계 ㄹ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기재된 공법적용 확인서를 각각 위 공사에 제출하였음

실적증명서를 2012년 2월부터 2015. 5. 18. 현재까지 공주시가 잘못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전국 시·군·구에 알리는 공주시의 문서(☐과-20379, 2015. 5. 18.), ㄱ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위 처리시설에 환경부 신기술 지정 제33호가 적용되었다고 장흥군 ☐사업소가 ●●에 통보한 문서(☐사업소-6479, 2010. 8. 9.)와 공법 확인의 근거(위 처리시설의 실시설계 보고서), ㄴ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위 처리시설에 환경부 신기술 지정 제33호 및 검증 제35호가 적용되었다고 제천시 ☐사업소가 ◎◎에 통보한 민원회신문서(2015. 4. 30.)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민원의 첨부서류는 3개 처리시설(ㄷ 폐수, ㄱ 하수, ㄴ 하수) 모두 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은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적용공법인 신규특허가 적용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기술제안서를 제출할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해당되고, 위 3건의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근거로 기술제안서에 기재한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등 주요 내용이 허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공사는 제기된 3건의 민원에 대하여 위 공사에서 확인한 내용을 사실대로 ◎◎에 민원회신 하여야 하고, 공주시, 장흥군 및 제천시에 민원 첨부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위 첨부서류 내용이 사실일 경우 공법업체로 선정된 ●●에 대하여 공법업체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했다.

2)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한국공항공사 ◆지역본부 □팀 D은 2009. 2. 2.부터 2017. 12. 7. 현재까지, 위 공사 ■본부 ○TF 팀장 E은 2012. 1. 16.부터 2017. 5. 29.까지, 위 공사 △지사 △시설팀장 F은 2009. 1. 2.부터 2015. 12. 23.까지 각각 위 공사 ◆지역본부 □팀 과

장, 차장 및 팀장의 직위에서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공법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
◎이 제기한 3건의 민원을 접수하고 이를 검토 및 회신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총
괄하였다.

가) D의 경우

위 사람은 2015. 6. 3. ●●이 공주시 ㄴ 폐수처리시설 등 5개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이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 실
적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 민원을 접
수·처리하였다.

위 사람은 위 민원을 확인하기 위해 공주시에 유선으로 사실확인을 요청하였고,
2015. 6. 5. 공주시로부터 2012년 2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ㄴ 폐수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기재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공주시가 발급하였으나
위 실적증명서는 잘못¹⁴⁾ 발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문서(☐과-22938)를 모사전송기
(FAX)를 통해 통보받음으로써 ●●이 공주시로부터 2014. 2. 13. 발급받아 위 공
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의 실적서류¹⁵⁾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
어 신규특허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위 사람은 위 민원에 첨부된 장흥군 ㄹ사업소가 ●●에 공법 확인을 통
보한 문서에는 ㄱ 하수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아닌 환경부 신기술¹⁶⁾이 적용된 것
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위 처리시설에 ●●의 환경부 신기술만 적용된 것으로 기재
된 실시설계 보고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었으므로 위 처리시설이 신규특허와 관련이

14) ㄴ 폐수처리시설에는 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고, 2012. 2. 14. 등록이 무효된 특허 제 10호가 적용됨

15) ●●이 공주시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및 2014년 8월 발급받아 제출한 적용공법 확인서

16) 환경부 신기술 지정 제33호, 검증 제35호(2007. 10. 18. 유효기간 만료)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이 장흥군으로부터 발급받아 위 공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장흥군이 발급하였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임의로 판단하고는 장흥군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위 사람은 2015. 6. 8. 제천시로부터 ㄴ 하수처리시설 준공(2004년 9월) 시 환경부 신기술 지정 제33호 및 검증 제35호가 적용되었으므로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기재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을 발급한 것은 잘못이지만 2013년 5월 이후부터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다는 허위¹⁷⁾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통보¹⁸⁾받은 바 있으나 적용공법이 먼저 선정된 후 하수처리시설이 착공 및 준공¹⁹⁾(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 포함)되는데 위 문서에는 위 처리시설의 준공일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²⁰⁾되어 있었으므로 위 처리시설의 적용공법이 변경되었다는 위 문서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민원에 첨부된 제천시가 ◎◎에 통보한 민원회신문서(2015. 4. 30.)에는 위 처리시설에 환경부 신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한 달여 사이에 위 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이 서로 다르게 기재된 문서가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두 가지 공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였는데도 행정기관이 발급한 문서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임의로 판단²¹⁾하여 제천시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17) ●●은 이미 준공되어 가동 중인 ㄴ 하수처리시설에 공기차단막을 설치(2013년 5월경)하였고, 공기차단막이 신규특허의 구성요소이므로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제천시는 ●●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음. 그러나 위 처리시설에는 건설교통부 신기술 지정 제251호가 적용되었음(구체적인 내용은 “처리안 2번” 참조)

18) 제천시 ㄹ사업소에 근무하던 H은 한국공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실적서류 발급과 관련한 사실확인을 요청받은 적은 없으나 위 공사에서 위 문서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문서의 수신처에 한국공항공사를 추가하였다고 진술

19) 위 공사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가동 중인 시설의 경우 준공일자가 명기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시설에 적용된 공법은 준공일부터 적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20) ●●이 제천시로부터 신규특허가 기재된 것으로 발급받아 2014. 7. 7. 위 공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에는 위 처리시설의 준공일자가 2004년 9월로 기재되어 있고, 제천시가 한국공항공사에 2015. 6. 8. 시행한 문서에는 위 처리시설의 준공일이 2004. 9. 30.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준공일이 변경되지 않았음

21) 제천시는 한국공항공사에 2015. 6. 8. 시행한 위 문서의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하여 같은 해 7. 2. ㄴ 하수처리시설에 2013년 5월 이후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15. 6. 10.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하여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를 확인하여 우리 공사에서 정한 공법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배정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기안한 후 차장 E, □팀장 F 및 ♡단장 G(2015. 12. 31. 퇴직)의 결재를 받아 ○○에 민원회신 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2015. 6. 30. 및 7. 21.²²⁾ 또다시 ○○로부터 ●●이 위 공사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공법선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각각 접수·처리하였다.

그런데 위 사람은 ●●이 신규특허의 국내 적용실적을 확인받기 위해 산청군으로부터 발급받아 위 공사에 제출한 표·호 하수처리시설의 공법적용 확인서와 관련하여 2015. 6. 18. 산청군으로부터 표·호 하수처리시설 준공(2011. 11. 20.) 시 환경부 신기술 지정 제33호 및 검증 제35호가 적용되었으므로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기재된 공법적용 확인서를 발급한 것은 잘못이지만 2013년 4월 이후부터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다는 허위²³⁾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통보²⁴⁾받은 바 있으나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새로이 적용되었는데도 준공일이 변경되지 않았고, 위 내용은 준공된지 1년 4개월여 만에 위 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이 변경되었다는 것이어서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행정기관이 발급한 문서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임의 판단하여 산청군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지 않았다.

내용의 “나공공하수처리시설 적용공법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발급 관련 공지” 문서를 전국 시·군·구에 다시 시행하였음

22) 2015. 7. 21.자 민원의 경우 ○○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2015. 7. 22. 한국공항공사에 민원을 이송하여 한국공항공사에서 민원을 처리한 것임

23) ●●은 이미 준공되어 가동 중인 표·호 하수처리시설에 공기차단막을 설치(2013년 4월경)하였고, 공기차단막이 신규특허의 구성요소이므로 위 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산청군은 ●●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음. 그러나 위 처리시설에는 환경부 신기술 지정 제33호 및 검증 제35호가 적용되었음

24) 산청군 □사업소에 근무하던 Q는 한국공항공사 직원으로부터 실적서류 발급과 관련한 사실확인을 요청받은 적은 없으나 ○○로부터 표·호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과 관련하여 위 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한국공항공사에 시행해달라고 구두로 요청받아 위 문서를 위 공사에 시행하였다고 진술

그후 위 사람은 2015. 7. 6. 및 같은 해 7. 24. “참가자격 선정 관련 제출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 관련 서류도 우리 공사 심의 및 평가기준에 의거 이상 없이 확인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회신문과 “♡공항 오수처리시설 공법선정은 우리 공사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회신문을 각각 기안하여 E, F 및 G의 결재를 받아 ◎◎에 민원회신을 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이 공주시로부터 발급받아 위 공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규특허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주시에서 단순히 적용된 공법을 잘못 기재하여 발급한 것이므로 위 실적증명서가 허위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공법업체 선정 취소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2016. 4. 20. ●●으로부터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공법기자재를 구매하는 내용의 물품구매(제조) 요구서를 기안한 후 차장 E, 팀장 J, 수단장 K 및 본부장 L의 결재를 받아 위 공사 ◆지역본부 재무관리팀에 수의계약을 요청하였고, 재무관리팀은 같은 해 4. 21. 서울지방조달청에 공법기자재 구매설치의 수의계약을 요청하였으며, 서울지방조달청은 같은 해 5. 30. ●●과 수의계약 하였다.

그 결과 ●●은 공법업체 선정 취소 등의 조치 없이 서울지방조달청과 수의계약을 하는 등의 특혜를 얻게 되었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민원이 회신되는 등으로 공공기관 민원조사·처리 업무의 신뢰성이 훼손되었다.

나) E의 경우

위 사람은 “2-나-2)-가)항”의 내용과 같이 ◎◎로부터 3차례에 걸쳐 제기된

민원의 주된 내용은 ●●이 위 공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의 실적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 ○○이 2015. 6. 3. 위 공사에 제기한 민원서류에 공주시가 ㄷ 폐수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국 시·군·구에 알리는 문서, 장흥군이 ㄱ 하수처리시설에 환경부 신기술이 적용되었다고 ●●에 통보한 문서 및 제천시 ㄴ 하수처리시설에 환경부 신기술이 적용되었다고 ○○에 회신한 민원회신문이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나-2)-가)항”의 내용과 같이 D이 ○○의 3회에 걸친 민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기안하여 올리자 ●●이 위 공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의 실적서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D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²⁵⁾하였고, ●●이 공주시로부터 발급받아 위 공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규특허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허위의 내용이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중대한 허위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에 대해 공법업체 선정 취소 등의 여부를 직접 검토하거나 D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2016. 4. 20. D이 기안하여 올린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공법기자재를 구매하는 내용의 물품구매(제조) 요구서에 그대로 결재하였다.

그 결과 “2-나-2)-가)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25) 위 사람은 2015. 7. 6. ○○에 회신한 문서에는 결재를 하지 않았으나 같은 해 7. 7. 위 공사 감사실에 ○○의 민원에 대한 처리내역을 회신하는 문서에는 결재를 하였음

다) F의 경우

(1) 민원업무 부당 처리

위 사람은 “2-나-2)-가)항”의 내용과 같이 ○○로부터 3차례에 걸쳐 제기된 민원의 주된 내용은 ●●이 위 공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의 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 ○○이 2015. 6. 3. 위 공사에 제기한 민원서류에 공주시가 ㄷ 폐수처리시설에 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국 시·군·구에 알리는 문서, 장흥군이 ㄱ 하수처리시설에 환경부 신기술이 적용되었다고 ●●에 통보한 문서 및 제천시 ㄴ 하수처리시설에 환경부 신기술이 적용되었다고 ○○에 회신한 민원회신문이 첨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나-2)-가)항”의 내용과 같이 D이 ○○의 3회에 걸친 민원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기안하여 올리자 공법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 제출한 실적서류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D, E에게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하였고, ●●이 공주시로부터 발급받아 위 공사에 제출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규특허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은 환경부 신기술이 적용된 실적을 충분히 제출하였기 때문에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에 대해 공법업체 선정 취소 등의 여부를 직접 검토하거나 D, E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없이 그대로 두었다.

그 결과 “2-나-2)-가)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위 사람은 “2-나-2)-다)-(1)항”의 내용과 같이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공법업체 선정과 관련된 민원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9. 7. “직접구매 대상물품 구매계획보고” 문서를 기안하는 등 ●●과 기술사용 협약서를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2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는 직무관련자이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1·2차 처리공법²⁶⁾과 별도로 3차 처리공법²⁷⁾(총인처리공법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 2014. 7. 7. 제출한 기술제안서 및 첨부서류에 따르면 ●●은 1·2차 처리 공법업체로, 주식회사 ▲▲(대표이사 M, 이하 “▲▲”이라 한다)은 3차 처리 공법업체로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이 2015. 9. 7. 기안한 “직접구매 대상물품 구매계획보고” 문서 및 위 문서의 붙임자료인 “주처리공법 기술사용 협약서(안)” 제9조 등에 따르면 ▲▲은 위 3차 처리와 관련하여 총인처리설비와 관련된 신기술 및 특허를 위 공사에 공급하는 기술공급자로 기재되어 있고, 공법업체로 선정된 ●●이 향후 위 공사와 공법기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은 총인처리설비와 관련된 기자재 일

26) 1차 처리(오수 중에 부유하는 물질이나 바닥으로 가라앉은 물질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와 2차 처리(오수 중에 녹아 있는 유기물 및 1차 처리에서 처리되지 않는 유기성 고형물을 제거하는 방법)에 적용되는 공법을 의미

27) 3차 처리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 처리방식을 조합하여 2차 처리에서 제거되지 않은 유기물 이외에 질소, 인과 같은 영양물질을 제거하는 고도의 처리방법을 의미

체를 ●●으로부터 하도급받아 납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은 ♡공항 오수처리시설 공법업체 선정의 결정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직무관련자이며, 공법업체 선정과 관련된 민원회신 및 기술사용 협약서 체결 업무는 위 사람의 직무에 해당되고, ▲▲의 대표이사인 M은 위 사람의 동생으로 M과 위 사람은 형제관계이다.

따라서 위 사람은 위 사람의 직무인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공법업체 선정과 관련된 민원회신 및 기술사용 협약서 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위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상담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5년 5월 또는 6월경 ▲▲이 공법업체 선정에 참가하였다는 사실을 알게²⁸⁾ 되었고, 이러한 경우 위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기자재 일부만을 ●●에 단순히 납품하는 업체에 해당되므로 직무관련자가 아닌 것으로 임의로 판단하였다.

그러고는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은 채 “2-나-2)-다)-(1)항”의 내용과 같이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공법업체 선정과 관련된 민원을 3차례에 걸쳐 검토 및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9. 7. 공법업체의 기자재는 공법보유사와 기술사용 협약서를 체결한 후 우선 구매[터빈 등 설비 1,300백만 원, 총인처리설비 420백만 원, 합계 1,720백만 원(부가가치세 제외)]하겠다는 내용의 “직접

28) 위 사람은 2014년 7월부터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공법업체 선정을 위한 실무를 총괄하였는데 위 업무를 수행할 당시에는 ▲▲이 공법업체 선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 민원을 제기하던 2015년 5월 또는 6월경 ▲▲이 공법업체 선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

구매 대상물품 구매계획보고(♡공항 오수처리시설 신축공사: 산업환경설비분야)” 문서를 기안하여 ♡단장, ◆지역본부장의 결재를 받은 후 ●●과 기술사용 협약서가 체결되게 하였으며, ▲▲은 위 협약서 및 2016. 5. 30. ●●과 서울지방조달청 간 체결한 수의계약을 근거로 ●●으로부터 하도급받은 407백만여 원 상당²⁹⁾의 총인처리설비를 ●●을 통해 위 공사에 납품하였다.

그 결과 위 사람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규정된 위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를 위반하였다.

※ 참고사항

징계시효가 완성된 사항이지만 D은 “2-가-2)항”의 내용과 같이 ●●이 신규 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제출한 3건의 정상가동 실적증명서에는 하·폐수 처리시설의 착공일자가 신규특허의 등록일보다 앞선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신규특허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위 실적증명서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2014. 8. 12. ●●을 공법업체로 결정하는 내용의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공법선정 결과보고” 문서를 기안하였고, E 및 F도 실적증명서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중간결재하여 ●●이 공법업체로 결정되게 하였다.

그리고 D은 “2-가-3)항”의 내용과 같이 ●●은 보유공법이 국내 처리시설에 적용되어 가동 중인 실적이 26건이라고 기재한 참가의향서를 위 공사에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신규특허가 적용된 실적은 ㄴ 폐수처리시설 등의 공법적용 확인서 4건

29) 계약요청 금액(423백만 원)에 낙찰률(96.38%)을 감안하여 산출한 추정금액(부가가치세 제외)

30)에 불과한데도 ●●이 제출한 공법적용 확인서 등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신규특허의 국내 적용실적이 10건 이상인 것으로 인정하여 2014. 10. 29. ●●을 공법업체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공법선정결과 수정변경보고” 문서를 기안하였고, E 및 F 또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위 문서에 그대로 중간결재하여 ●●이 공법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또한 F은 2014년 7월부터 ♡공항 오수처리시설 공법업체 선정의 실무를 총괄하면서 ●●이 위 공사에 제출한 기술제안서의 첨부서류에 ▲▲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약약서, 성능보증서(총인처리공법), 자재성능 보증서(총인처리공법), 기술이전계획서(총인처리공법) 및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3건³¹⁾이 첨부되어 있어 자신의 동생인 M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공법업체 선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은 채 같은 해 8. 7. 공법업체 선정을 위한 공법심의위원회³²⁾의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신규특허의 국내 적용실적 확인업무도 수행하는 등 공법업체 선정과정에서 주요 업무를 수행하였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1. 관련자 주장 및 판단

D·E·F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도 참가의향서 작성지침 및 기술제안서

30) ㄹ 폐수처리시설, ㄴ 폐수처리시설, ㄷ 폐수처리시설(2단계), ㄱ 하수처리시설의 공법적용 확인서

31) 음성군 ㄱㄱ공공하수장 고도처리시설, 양평군 ㄱㄴ공공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청주시 ㄱㄷ하수처리시설

32) “한국공항공사구매계약 등 외부평가위원 선정지침”(2012. 10. 4. 지침 제98호)에 따라 공법심의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는데 서울지역본부 환경관리팀장이 위원장(위원회를 주관하고 평가를 총괄하되 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음)이 되고,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작성지침에 특허의 국내 적용실적만 유효하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 보유하고 있던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기술의 국내 적용실적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의 경우 신기술의 국내 적용실적을 10건 이상 제출하였기 때문에 ●●을 공법업체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공사가 2014. 7. 26. 작성한 “오수처리시설 신축사업 공법선정 계획보고”에 공법업체 선정의 근거로 제시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제조 계약을 함에 있어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보유한 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경우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를 받은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보유하고 있던 환경부 신기술은 2001년에 등록되어 2007년에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다른 경쟁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일반기술이고, 설령 위 사람들이 신기술의 국내 적용실적을 인정하여 ●●을 이 건 공법업체로 선정하더라도 신기술이 적용된 공법기자재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의 체결대상이 되는 신규특허의 국내 적용실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사람들은 신규특허의 국내 적용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에 2014. 8. 13. 신규특허의 정상가동 실적 10건 이상을, 같은 해 8. 29. 신규특허가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신규특허의 국내 적용실적을 요구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유효기간이 만

료된 신기술의 국내적용 실적도 인정할 수 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장흥군 등 9개 시·군은 “2-가항”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공문서를 작성·발급할 때 철저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거쳐 사실과 다른 공문서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한국공항공사는 “2-가항”과 관련하여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추가적인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이 제출한 실적서류 등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법률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공항공사는 “2-나항”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특허적용 실적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민원에 회신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추가 사실 확인을 소홀히 했던 점은 잘못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기술의 적용실적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답변과 함께 ●●이 신규특허가 적용된 것으로 기재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의 실적서류를 제천시 및 산청군으로부터 발급받아 위 공사에 제출(2014. 7. 7.부터 같은 해 9. 4. 사이)한 이후인 2015. 6. 8. 및 6. 18. 제천시 및 산청군으로부터 ㄴ 및 표·ㅎ 하수처리시설에 적용된 공법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발급 관련 공지” 문서를 각각 제출받았는데 위 문서에 2013년 4월 또는 5월 이후 신규특허가 위 처리시설에 적용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에 실적서류를 발급한 총 13개 기관³³⁾(실적서류 20건³⁴⁾) 중 공주시, 제천시 및 산청군을 제외한 장흥군 등 10개 기관³⁵⁾으로

33)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실적서류를 발급한 9개 지방자치단체와 정상적으로 실적서류를 발급한 4개 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 영광군, 청주시, 여주시)

34) 정상적으로 발급된 ㄴ 폐수처리시설, ㄴ 폐수처리시설, ㄴ 폐수처리시설(2단계), ㄴ 하수처리시설의 공법적용 확인서 4건 포함

부터는 적용공법을 정정하는 내용의 문서가 제출되지 않아 이들 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위 공사는 공주시가 발급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규특허와 관련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제천시 등 2개 시·군(제천시, 산청군)이 시행한 문서에는 “2-나-2)-가)항”의 내용과 같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는데도 위 시·군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화천군과 창원시의 경우 2014년 8월 공법적용 확인서 등의 실적서류(화천군은 공법적용 확인서 1건, 창원시는 적용공법 확인서 1건)를 ●●에 잘못 발급하였다는 내용의 문서를 전국 시·군·구에 시행(화천군의 경우 2015. 7. 10. 시행³⁶⁾, 창원시의 경우 2015. 7. 3. 인지하여 7. 24. 시행³⁷⁾)하였으므로 위 공사가 2015. 7. 21. ◎◎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회신일: 2015. 7. 24.)을 하기 전에 사실확인을 하였다면 위 실적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위 시·군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지 않고서도 ●●이 위 공사에 제출한 실적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민원회신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답변은 인정하기 어렵다.

문책요구 양정 공법업체 선정 관련 민원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D, E, F의 행위는 위 공사 「취업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 공사 「인사규정」 제52조 제1호의

35) 장흥군, 파주시, 정선군, 화천군, 화성시, 창원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영광군, 청주시, 여주시

36) 화천군은 2015년 7월경(날짜모름) ●●에 공법적용 확인서를 잘못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같은 해 7. 10. “화천군 사창하수처리시설 적용공법 공법적용 확인서 관련 공지” 문서를 전국 시·군·구 등에 시행하였음

37) 창원시는 2015. 7. 3. 선일이 위 관서에 제기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에 적용공법 확인서를 잘못 발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같은 해 7. 24. 「진북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적용공법 확인서 정정 공지」 문서를 전국 시·군·구 등에 시행하였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F은 앞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보조공법사(3차 처리)로 선정된 ▲▲의 대표 이사가 자신의 동생인데도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등과 상담하지 않고 민원업무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점을 감안할 때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므로 위 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68조 제1항 관련 [별표 12] “징계양정기준”에 따른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1.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①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공법업체 선정 관련 민원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D, E 및 F을 한국공항공사 「인사규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D·E: 경징계 이상, F: 정직)하고(문책)

②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공항 오수처리시설의 공법업체로 선정된 ●●에 대해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

2. 장흥군 등 [별표]에 기재된 9개 시장과 군수는 앞으로 적용된 공법이 잘못 기재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공법적용 확인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별표]

적용공법이 잘못 기재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등 발급 및 제출 명세

(단위: m²/일)

일련 번호	발급기관	처리 시설명	시설용량 (준공시기)	문서발급관련					착공시기
				신청시기	발급시기	발급문서명 ¹⁾	잘못기재된 특허	실제 적용된 특허 ²⁾	
1	장흥군	ㄱ 하수	4,400 (‘11년 3월)	‘14. 4. 2.	‘14년 8월	정상가동	특허번호 제-호	제33호, 제35호	‘08년 4월
				‘14년 8월	‘14년 8월	공법적용			
				‘14년 8월	‘14년 8월	적용공법			
2	제천시	ㄴ 하수	1,200 (‘04년 9월)	‘14. 7. 3.	‘14. 7. 4.	정상가동	특허번호 제-호	제251호 ³⁾	‘02년 9월
				‘14년 8월	‘14년 8월	공법적용			
				‘14년 8월	‘14년 8월	적용공법			
3	산청군	ㄷ 하수	1,800 (‘11년 12월)	‘14년 8월	‘14년 8월	공법적용	특허번호 제-호	제33호, 제35호	‘09년 2월
				‘14년 8월	‘14년 8월	적용공법			
4	파주시	- 하수	2,100 (‘03년 8월)	‘14년 8월	‘14년 8월	공법적용	특허번호 제-호	제33호, 제35호	‘01년 5월
5	정선군	- 하수	1,200 (‘07년 12월)	‘14년 8월	‘14년 8월	공법적용	특허번호 제-호	제33호, 제35호 제251호	‘04년 8월
6	화천군	- 하수	1,600 (‘08년 9월)	‘14년 8월	‘14년 8월	공법적용	특허번호 제-호	제33호, 제35호 제251호	‘06년 12월
7	화성시	- 폐수	3,000 (‘05년 9월)	‘14년 8월	‘14년 8월	공법적용	특허번호 제-호	제33호, 제35호 특허번호 제-호	‘04년 1월
8		- 폐수	2,500 (‘05년 4월)	‘14년 8월	‘14년 8월	공법적용	특허번호 제-호		‘04년 9월
9	창원시	- 폐수	2,000 (‘11년 7월)	‘14년 8월	‘14년 8월	적용공법	특허번호 제-호	제33호, 제35호 특허번호 제-호	‘07년 8월
10	공주시	ㄹ 폐수	1,700 (‘12년 9월)	‘14년 2월	‘14. 2. 13.	정상가동	특허번호 제-호	제33호, 제35호 특허번호 제-호	‘10년 6월
				‘14년 8월	‘14년 8월	적용공법			

9개 기관의 10개 처리시설에 대한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3건, 공법적용 확인서 8건, 적용공법 확인서 5건 등 16건이 잘못 발급·제출됨

- 주: 1. 발급문서명에 정상가동은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공법적용은 공법적용 확인서, 적용공법은 적용공법 확인서를 의미함
 2. 제33호, 제35호는 환경부 신기술 지정 제33호 및 검증 제35호를, 제251호는 건설교통부 신기술 지정 제251호(유효기간: 2005. 9. 24.까지)를 의미함
 3. 제천시는 ㄴ 하수처리시설에 환경부 신기술 제33호 및 검증 제35호가 적용된 것으로 기재하여 실적서류를 발급하였으나 위 문서가 보관하고 있는 고도처리공법 비교자료에는 건설교통부 신기술 제251호가 적용된 것으로 되어 있음
 4. ㄹ 폐수처리시설(한국산업단지공단 발급), ㅂ 폐수처리시설(영광군 발급), ㅅ 폐수처리시설(2단계, 청주시 발급), ㅈ 하수처리시설(여주시 발급)의 공법적용 확인서 4건은 정상적으로 발급 되었으므로 [별표]에 미기재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